

제301회 임시회

2011. 6. 15(수)~6.16(목)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이광진 의원외 6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1년 6월 2일

- 회부일자 : 2011년 6월 8일

3. 제안이유

-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무 규정 및 권장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가.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제3조제5항, 제4조제2항 신설)

나.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하여 도지사와 지역건설산업체의 권장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1 신설)

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정비
(제5조제2항제1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인 → 명, 잔임 기간 → 남은 기간, 통합 → 총괄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무 규정 및 권장 사항을 규정하고
- 조례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